

수지자이 에디시온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12.19.(금)]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oph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많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수탁사(사업주체)	시행위탁사	시공사
상호	한국자산신탁(주)	(주)이원	지에스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10111-2196304	200111-0246160	110111-000269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92(생촌동)	서울특별시 중로구 중로 33(창천동, 그랑서울)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감리	소방감리
상호	주식회사 동우이앤씨	주식회사 대경기술단	주식회사 진광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금액	2,421,100,000	613,926,400	176,000,000	128,352,000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025.12.29(월)	2025.12.30(화)	2025.12.31(수)	2026.01.02(금)	2026.01.08(목)	2026.01.10(토)~ 2026.01.13(화)	2026.01.19(월)~ 2026.01.21(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지자이 에디시온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43번지) 	

1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청 공동주택과 - 30578호(2025.12.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1-1번지 일원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5층 6개동 총 480세대 중 일반분양 480세대
 [특별공급 243세대(기관추천 43세대, 다자녀가구 47세대, 신혼부부 100세대, 노부모부양 14세대, 생애최초 3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2029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기타 공용 면적(이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1	2	3	4		
2025 000622	01	084.9772A	84A	84.9772	26.7749	111.7521	72.2083	183.9604	45.4777	107	10	10	24	3	10	57	50	6				
	02	084.9892B	84B	84.9892	28.1733	113.1625	72.2186	185.3811	45.4841	38	4	4	9	1	3	21	17	2				
	03	084.9875C	84C	84.9875	27.2346	112.2221	72.2171	184.4392	45.4832	224	22	22	51	7	20	122	102	10				
	04	084.9671D	84D	84.9671	28.1145	113.0816	72.1997	185.2813	45.4723	70	7	7	16	2	6	38	32	4				
	05	120.8061	120	120.8061	36.5778	157.3839	102.6535	260.0374	64.6525	39	-	4	-	1	-	5	34	2				
	06	144.8653P	144P	144.8653	46.8698	191.7351	123.0975	314.8326	77.5283	1	-	-	-	-	-	1	1	-				
	07	155.7575P	155P	155.7575	50.4584	206.2159	132.3530	338.5689	83.3576	1	-	-	-	-	-	-	1	-				
합계										480	43	47	100	14	39	243	237	24				

주택형(타입)	공급세대수	최저		최고	
		면적	가격	면적	가격
84A	107	1,495,000,000	1,565,000,000		
84B	38	1,366,000,000	1,492,000,000		
84C	224	1,423,000,000	1,549,000,000		
84D	70	1,387,000,000	1,513,000,000		
120	39	2,098,000,000	2,198,000,000		
144P	1		5,000,000,000		
155P	1		5,200,000,000		

■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60%)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계약시	2026.02.20	2026.05.22	2026.11.20	2027.05.21

중도금(60%)			잔금(30%)
4차(10%)	5차(10%)	6차(10%)	
2027.11.19	2028.03.24	2028.08.18	입주시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전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전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전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전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전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전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3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47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 포함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생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선정 순서: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①지역: 해당시·도 거주자 50%(경기도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3호(2024.03.25.))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경정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하며, 나머지 주택은 우선 공급에서 미달된 주택을 포함)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우선공급에서 입주하지 않은 경기도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공급 ※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100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 분)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2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10%)</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2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0%)</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부당 소득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순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부당 소득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부당 소득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용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생」 제855호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 전일 출생신고한 경우
 - (순수인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당첨자 선정방법	내용
당첨자 선정방법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고,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고,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양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4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음 것

당첨자 선정방법	내용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선정 순서: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용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39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음 것 - 세대주일 것 이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비이웃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가 아닌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내용		
당첨자 선정 순서: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부당 소득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부당 소득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②지역: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용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③지역: 생애최초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④자산기준

- (임신·입양) 입주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양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일 것 (외국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규제지역 1순위 청약 불가)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음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음 것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영역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